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조은희 · 이인선 · 김재섭
신성범 · 김승수 · 김용태
서천호 · 이성권 · 주호영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생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 ----- ----- <u>.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u>결정하여야</u> 한다.	⑦ ----- ----- ----- ----- ----- ----- ----- ----- ----- ----- <u>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u>

⑧ (생 략)	<u>야</u> -----. ⑧ (현행과 같음)
---------	-------------------------------